

국민연금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추가채용 공고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들어 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체험형 청년인턴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21. 4. 2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1. 채용 개요

- 채용유형 : 체험형 청년인턴
※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채용인원 : 총 1명

채용구분	권역	근무지	인원
체험형 청년인턴	서울북부	용산지사	1명

- 근로기간 : 2021. 5. 13.(목) ~ 8. 24.(화)
- 수행업무 : 공단 현안 업무 보조·지원 등
- 근무조건 및 보수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 ~ 18:00)
근 무 지	○ 국민연금공단 용산지사 - 위치는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참조
보수수준	○ 월 1,972,480원(중식비 150,000원 포함)
복리후생	○ 사회보험 및 단체보험 가입
기타사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1회의 휴가 제공 ○ 취업시험에 응할 경우 공가 부여 ○ 취업박람회 참석 시 출장(무급) 가능

2. 지원자격

지원자격
○ 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사람('86. 5. 14. 이후 출생)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근로시작일('21. 5. 13.)부터 출근 가능한 자 ※ 학업 등의 기타사유로 근무시간 및 근무일 조정 불가
〈 지원 제한 대상 〉 ○ '공무원 임용 대기' 등 취업이 결정된 사람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사람
추후 지원 제한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채용의 취소 및 근로계약 해지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복무를 완료한 '사회복무요원'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 복무 기간)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3.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 4. 23.(금) ~ 4. 30.(금)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우편·방문·택배 등 기타 방법 불가>
 - ※ 입사지원서를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한 후 스캔파일을 첨부하여 발송
 - ※ 용량이 20MB 이상인 경우 수신이 불가하니 주의 요망
 - ※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 집중되어 접수여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 접수처

권역(접수처)	접수 이메일	연락처
서울북부	nps01121@nps.or.kr	02-2176-9905

4. 전형절차 및 일정

연번	전형절차	일정	비고
1	공고 및 지원서 접수	'21. 4. 23.(금) ~ 4. 30.(금) 17:00까지	이메일 접수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 5. 7.(금)	개별통보
3	면접전형 ^{주1)}	'21. 5. 11.(화)	개별통보
4	최종합격자 발표	'21. 5. 12.(수)	개별통보
5	근로계약 및 부서배치	'21. 5. 13.(목)	합격한 근무지로 출근

주1) 면접은 집단면접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및 공단 내·외부 사정에 따라 모든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전형 사항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1) 자기소개서(10) : 반드시 항목별 300자 이상 성실하게 작성(최대 500자)

2) 자격증(80)

구분	분야	자격증
일반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재무관리	한국재무설계사(AFPK)
	사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정보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 2급 이상

※ 해당 자격증을 모두 기재 하되, 분야별 동일 종류의 자격증은 상위 자격증만 기재,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하여 발급 완료된 자격증에 한함

- 해당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득일 및 등록(자격)번호 정확히 기재

- (사회복지) 사회복지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상장 형태로 왼쪽 상단에 적혀 있는 자격번호 기재

- (재무관리) 인증 유효기간이 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함
- (사무·정보) 해당 자격증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등에 적혀 있는 자격번호를 기재
- (한국사) 인증서 상의 인증번호를 기재

3) 공인어학성적(10)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공인어학성적에 한하며, 유효한 공인어학성적은 모두 기재

TOEIC	New TEPS	TOEFL
700점이상	300점이상	79점이상

- ※ 공인어학성적 인정 기준표 점수 이상일 경우만 기재하고, 2019.5.1. 이후 응시하고 입사지원서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발급된 경우만 인정
- ※ 시험 주관기관 조회 및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 특별시험 또는 모의시험 등의 성적은 불인정

4) 우대사항

분야			가점 부여 대상 및 기준	적용단계
사 회 형 평	법 정	취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름	서류 면접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 면접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산학협력 과정 이수자 ^{주1)}		▶ 국민연금 오픈캠퍼스 1~3기 수료자 ▶ 2020년도 노후준비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19 ~ 2020년도 NPS-IT 현장실습을 이수한 자	서류

주1) 2022년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채용까지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1회에 한하여 적용하며 과거 청년인턴에 지원하여 가점을 부여받은 대상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

6. 청년인턴 근무혜택

근무혜택	조건	제한사항
수료증 발급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경력증명서 발급	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발급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
추천서 발급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근무자 해당	발급기한은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회까지 발급 가능
정규직 채용 서류전형 가점	당해연도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청년인턴평가표”상 “미흡”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공단 신규채용 시 가점 부여	2022년도 중의 신규채용 전형만 적용(2021년 및 2023년도 이후 신규채용은 미적용)

7. 유의사항

- 본 채용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사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공단에서 지정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가 접수 마감시간[2021. 4. 30.(금), 17:00]까지 지역본부 접수담당자 이메일로 수신(도착)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할 때에 내용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을 선명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과 변경사항 발생 시 개별 안내합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포함),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소개서에 경력 및 경험내용 기술 시 개인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증빙서류와 지원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됨)
- 지원서 기재의 착오 또는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면접전형 중 공단 직원과의 친인척 관계 내용을 언급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응시자격 또는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근무시작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 합격 또는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직 중에는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근무시작일 전 직전 근무지에서 퇴사처리 완료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유사증상(발열, 기침 등)이 있을 경우 면접 응시가 불가합니다.
-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6의 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병역법」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